

(가칭)비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6. 9. 29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교육·문화적 취약지역인 경부선 철로변 북편 주민을 위한 비산·원대권역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
-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, 지식과 정보 습득의 기회제공으로 정서 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(가칭)비원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(안)

○ 사업개요

- 위 치 : 서구 비산동 1025-6번지(동아리공원)
- 규 모 : 부지 680㎡, 연면적 700㎡, 지상3층
- 사업기간 : 2016. 7. ~ 2018. 3.
- 주요시설 : 어린이자료 열람실, 종합자료 열람실, 문화 및 사무공간 등
- 사 업 비 : 36억원(전체 구비, 부지매입 8, 건축 24, 도서·장비 4)

○ 추진현황

- 시장, 구청장 · 군수 정책협의회 市토지활용 건의 : 2016. 5월
- 市 공원녹지과 비산동 동아리공원(공공용지) 분할 협의 : 2016. 5월
- 동아리공원내 건축위치 재검토 및 市 실무자 협의 : 2016. 6월
- 市소유지활용 (가칭)비원도서관건립 기반조성 계획 수립 : 2016. 7월
- 비산·원대권역 구립도서관건립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용역 : 2016. 7월
- 동아리공원 분할 측량 : 2016. 8월
- 동아리공원 도시관리계획(안) 열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: 2016. 8~9월
- (가칭)비원도서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: 2016. 9월 8일
-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심의 : 2016. 9월 21일

○ 향후계획

- 시소유 토지매수 및 사용승인 신청 : 2016. 9월~12월
-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: 2016. 10월
-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: 2016. 10월
- 자체 투자심사 : 2016. 10월
- 2017년 본예산 편성 : 2016. 10월
- 비산동 동아리공원 시설재배치 계획 수립 : 2016. 10월
-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: 2016. 12월
- 건축 설계공모 : 2016. 11월~2017.1월
- 건축 실시설계 : 2017. 1~4월
- 착공 및 준공 : 2017. 5월~2018.2월
- 개관 : 2018. 3월

나. 관리계획 재산

(단위:m²,천원)

명 칭	구분	소 재 지	수량	금 액	비 고
(가칭)비원 도서관	토지	비산동 1025-6	680	800,000	토지매입비
	건물	비산동1025-6	700	2,400,000	공사비 등

3. 공유재산관리계획서 (2017년도관리계획총괄표)

○계획명 : (가칭)비원도서관 건립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	분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	
		건 수	면 적	금 액	건 수	면 적	금 액	건 수	면 적	금 액		
취 득	계	토 지	1	680	800				1	680	800	
		건 물				1	700	2,400	1	700	2,400	
		기 타										
	1. 매입	토 지	1	680	800				1	680	800	
		건 물										
		기 타										
	2. 교환 으로 취득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
		기 타										
	3. 기타, 취득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1	700	2,400	1	700	2,400	
		기 타										

4. 2017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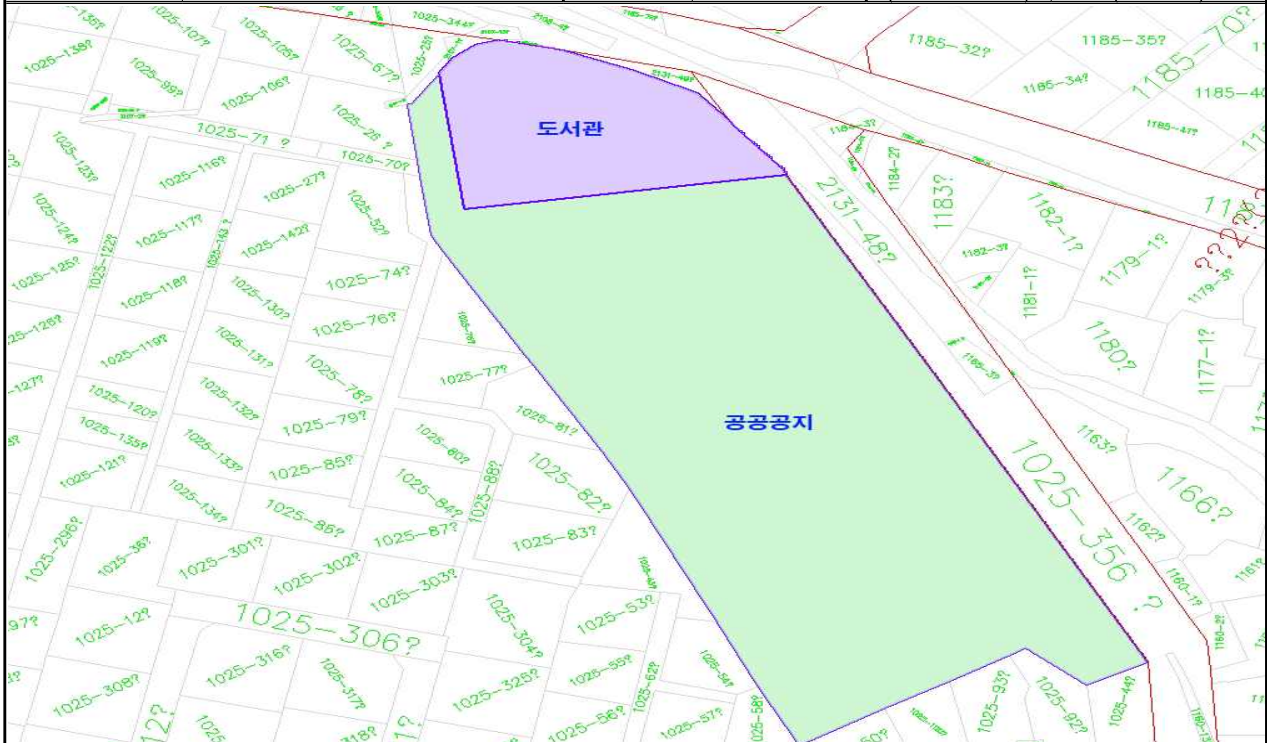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m², 백만원)

일 련 번 호	재 산 표 시			추 정 가 액	취 득 (건 축) 시 기	취 득 사 유	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 소, 성 명	비 고
	구 분	소 재 지	면 적 (m ²)					
계				3,200				
1	토지	서구 비산동 1025-6	680	800	2017. 1월	비산·원대 권역 (가칭) 비원도서관 건립	대구 광역시	공공 공지
2	건물	서구 비산동 1025-6	700	2,400	2017. 1월 ~ 2018. 2월	"	대구 광역시 서구	신축

5. 현장 위치도 : 비산동 동아리공원

소재지	서구 비산동 1025-6	지 목	대	면 적 (분할면적)	4,373㎡ (680㎡)
-----	---------------	-----	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

6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(붙임 참조)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-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, 제12, 제14조

【관련법령】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.2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1.20.>

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1.20.>

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1.20.>

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1.20.>

1.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1. 사업목적 및 용도
2. 사업기간
3. 소요예산
4. 사업규모
5. 기준가격 명세
6. 계약방법

⑦ 이 조에서 "기준가격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 <개정 2016.8.31.>

1. 토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

□ 「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제5조(심의회 의 심의사항) ①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
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,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(개정 2014.3.10)